

# 업무 협약서

충청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진천군체육회는 도민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컨텐츠 운영 및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충청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충청북도 진천군체육회가 건강증진을 위한 컨텐츠 운영 및 개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운영원칙)** ① 충청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충청북도 진천군체육회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분야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  
②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이 필요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제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3조(협약사항)** 협약 당사자가 협력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충청북도 건증진사업 컨텐츠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협력
2. 신체활동 증진 컨텐츠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
3. 신체활동 증진 컨텐츠 운영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 협력
4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협력

**제4조(비밀유지)** ① 협약 당사자는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, 개인정보, 상대 당사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본 협약서가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  
②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에 의해 추진되는 협력사업 관련 내용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언론 홍보자료로 사용할 경우,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**제5조(지식재산권 보호)** ① 협약 당사자는 자료, 문서 및 인력 등의 교류에 있어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  
② 본 협약서에 의거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사용은 개별 협정에 따른다..

**제6조(효력발생 및 협약기간)**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**제7조(협약의 해지)** ① 대내외적으로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 
② 단,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해지 예정일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협약의 해석)**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협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의 취지에 따라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.

충청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진천군체육회는 협약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,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7월 16일

 충청북도  
진 천 군 체 육 회  
회 장 김 명 식

김명식

 충청북도  
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 
단 장 김 혜 숙

김혜숙